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0일, 김태선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첫 단계를 마련했지만,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부서에서 업무를 분산 처리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된 사고 예방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각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기계, 설비, 작업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가 필요함.

이미 선진국들은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HSE)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우리 대한민국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조직 개편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와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영국의 보건안전청,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력확충·채용·보직·교육 등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기존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였고, 또한 2022년 11월부터는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최근의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사망사고만인율이 2023년 기준 0.39‰로 감소하기도 하였는바, 현행 체계 및 로드맵에 따른 2026년까지의 목표달성 및 정책효과 여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거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근로기준 관리 감독 및 산업재해 보험 업무와의 중첩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유로, 고용구조나 노동조건의 문제와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은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무와 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재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과 기능이 일정 부분 중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산업안전보건청과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정립 등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